의안번호	2208720
의 뢰 인	배현진의원
회 답 일	2025.4.17.
추계번호	25C1356

무용진흥법안

【비용추계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비용추계 결과

❑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실태조사를 위한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억 4,000만원(연평균 4,8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
○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임

○ 이에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기본계획 수립 (안 제5조)	90					90	18
실태조사 (안 제6조)	150	-	-	-	-	150	30
합계	240					240	48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)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무용 진흥 및 무용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・시행하여야 함	의무규정
2	안 제6조(실태조사)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활성화 정책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3	안 제7조(지식재산권의 보호)	정부는 무용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1. 인터넷 등 전자기술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처 2. 무용 관련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. 그 밖에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사항	재량규정
4	안 제8조(전문인력의 양성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(제1항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, 대학, 그 밖의 기관을 무용 전문인력 양성기관(이하 "양성기관"으로 한다)으로 지정하고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5	안 제9조(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활성화)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6	안 제10조(무용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)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무용의 진흥을 위하여 무용 관련 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음(제1항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무용 관련 단체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7	안 제11조(무용 창작 지원)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무용과 다른 분야 콘텐츠와의 융합 및 연계 등 다양한 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8	안 제12조(무용 향유 문화 활성화)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에게 무용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무용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9	안 제15조(국립무용원)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소속하에 무용 진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국립무용원을 둠 국립무용원은 무용 공연의 제작 및 보급 지원, 무용자료의 수집·제공·전시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5조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)	○	
2	안 제6조(실태조사)	○	
3	안 제7조(지식재산권의 보호)	×	- 실시 중, 사업규모 확대 가능
4	안 제8조(전문인력의 양성)	×	- 실시 중, 사업규모 확대 가능
5	안 제9조(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활성화)	×	- 실시 중, 사업규모 확대 가능
6	안 제10조(무용 관련 단체의 육성 · 지원)	×	- 실시 중, 사업규모 확대 가능
7	안 제11조(무용 창작 지원)	×	- 실시 중, 사업규모 확대 가능
8	안 제12조(무용 향유 문화 활성화)	×	- 실시 중, 사업규모 확대 가능
9	안 제15조(국립무용원)	×	- 조직규모 예측 불가능 현 시점에서 국립무용원 조직의 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려움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❑ 제정안의 일부 조항은 현재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, 제정안에 따라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 상황에서 확대되는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을 알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○ 제정안과 관련된 사업의 예산현황은 다음과 같음

[표 2] 제정안과 현행 사업 비교

조·항(조제목)	현행 사업(2025년)
안 제7조(지식재산권의 보호)	- 저작권보호활동활성화(26,884백만원)
안 제8조(전문인력의 양성)	- 예술기술융합창의인재교육(530백만원) - 아르코청년예술가지원(3,126백만원)
안 제9조(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활성화)	- 예술가해외레지던스 지원(700백만원) - 공동창제작지원(1,456백만원) - 해외문화기관협력(243백만원) - 인바운드국제협력강화(300백만원)

조·항(조제목)	현행 사업(2025년)
안 제10조(무용 관련 단체의 육성·지원)	- 국립발레단 운영(14,164백만원) - 국립현대무용단 운영(7,238백만원) - 국립무용단 운영(4,494백만원) - 국립국악원 무용단 운영(3,170백만원) -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(8,638백만원)
안 제11조(무용 창작 지원)	- 공연예술창작산실(13,862백만원)
안 제12조(무용 향유 문화 활성화 지원)	- 통합문화이용권(263,581백만원) - 청년문화예술패스(17,000백만원)

자료: 문화체육관광부

❑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무용 진흥 및 무용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(안 제5조)

❑ 안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무용 진흥 및 무용문화산업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책연구비 등 추가재정소요 발생 예상

❑ 기본계획은 제정안 시행 첫해에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

❑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비로 5년마다 9,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

○ 문화체육관광부는 「독서문화진흥법」 제5조에 따른 독서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비로 2023년도에 9,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

[표 3]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
기본계획 수립(안 제5조)	90	-	-	-	-	9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실태조사(안 제6조)

❑ 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무용 진흥 및 무용문화산업 활성화 정책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,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발생

○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되, 제정안 시행 첫 해에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

○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실태조사를 위한 정책연구비 등으로 5년마다 1억 5,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

- 문화체육관광부는 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5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실태조사를 위해 2025년도에 1억 5,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.

[표 3]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실태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
실태조사(안 제6조)	150	-	-	-	-	15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Ⅳ. 부대의견

❑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
❑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Ⅴ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	이진우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na.go.kr